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·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위탁대상 업무
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·관리에 관한 업무

2. 위탁기관

- 종 전 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, 손해보험협회
- 변 경 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
3. 변경일자 : 2024년 1월 2일